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

## Rechtsprobleme und die Lösungen bei internationalen Eheschließungen

조 은 희\*

Cho, Eun-Hee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국제결혼의 현황과 결혼이민자의 인권 실태
- III. 결혼이민자에 대한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 IV. 맺는말

### 국문초록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오는 결혼이민자는 상당한 수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결혼이민자는 혼인을 위한 만남에서부터 혼인 후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의 정착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제결혼 이민자와 관련된 법률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민자, 외국인 배우자, 국적취득, 이주여성, 국제결혼

논문접수일 : 2009. 6. 29.

심사완료일 : 2009. 7. 23.

게재확정일 : 2009. 7. 23.

\* 법학박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들어가는 말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 중 1997년 3.2%에서 2007년 11.1%의 증가율<sup>1)</sup>을 보였으며, 이에 2020년에는 신생아 3명중 1명이 혼혈아동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보도 되었다.<sup>2)</sup> 이처럼 현대 사회의 가족의 형태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서 무엇보다도 팔목할 만한 변화는 국제결혼율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부분은 한국에 정착하여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의 정착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는 빠르게 파탄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이혼율은 총 이혼율 대비 7.1 %에 달하며, 이혼한 이들의 동거기간을 계산해 본 결과 4년 이하가 80.0%에 달한다. 또한 이주여성이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장 4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80.0%에 이른다. 또한 2007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126,955명 중 국적취득자는 38,991명(30.7%), 국적미취득자는 87,964명(69.3%)에 이른다.<sup>3)</sup>

이것은 다수의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순수혈통주의, 단일민족 등의 신화에 익숙한 우리 사회는 외국인 이주여성을 사회적 차별이나, 냉대 그리고 가부장구조하에서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의 갈등, 가정폭력, 남편의 혈족과의 갈등문제, 낯선 문화와 언어에서의 장벽, 경제적인 문제, 취업 그리고 자녀양육 문제 등 이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거주외국인 혹은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sup>4)</sup>, 이에 '재한의

1) 국제결혼 (international marriage)을 통해 형성된 가족의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다소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 중앙일보 2006년 4월 4일자.

3) 국적취득현황 통계는 <표3> 참조.

4) 김형균,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사회적 통합방안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한국사회학회, 2007; 김이선 외,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12; 문순영, "헌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통권 제72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6; 정기선 외,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2 등 각 지역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국민처우기본법'(2007.5.17),<sup>5)</sup>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sup>6)</sup>이 제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sup>7)</sup>'을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된 상태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온 결혼이민자에게 8)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그들의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의 통계적 분석과 현재의 인권관련 실태를 검토하고,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까지 이혼, 사망, 실종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법과 제도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현재의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국제결혼 관련 현황과 결혼이민자의 인권 실태

### 1. 국제결혼 관련 현황

전국적 국제결혼의 현황<sup>9)</sup>을 보면 2007년에 38,491건으로 2000년에 12,319건에 비하

- 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내용은 ①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하며(제5조), ②관계 중앙행정기간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제6조), ③주요 외국인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으로서 ④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노력하여야하며(제10조), ⑤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11조), ⑥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⑦난민과 영주권자에 대하여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규정인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 14조) ⑧제20조에서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전담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나아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6)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7)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①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 교육, 고층·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 8)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3호).
- 9) 국제결혼 관련 현황은 통계청, 「2007 혼인통계결과」, <http://www.nso.go.kr>, 2007년 03월 자료에 의한 것으로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것이다.

여 3배 이상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국제결혼의 비율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비율은 2005년 이후 2년째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제결혼비율이 감소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2003년 이후 국제결혼의 증가 폭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동안 국제결혼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가시화되어 국제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혼인건수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외국인과의 혼인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3.5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증 감	1,782	2,918	679	9,574	9,864	7,716	-3,597	-1,199	-1,356
증 감 륜	18.1	25.1	4.7	63.0	39.8	22.3	-8.5	-3.1	-3.6
■ 한국남자+ 외국여자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증 감 륜	29.3	39.4	10.5	75.3	33.9	22.4	-3.4	-3.7	-1.5
■ 한국여자+ 외국남자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증 감 륜	4.6	3.8	-6.9	33.8	58.3	22.0	-21.9	-1.3	-10.5

배우자의 성별관계에 있어서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혼인이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와의 혼인보다 약 2000여건 더 많다<표 1>. 이는 농·어촌 및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들이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여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남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 국적 여자와의 결혼이 14,5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6,611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여성과의 결혼이 1,804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동안 급격히 증가하던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2006년보다 34.7% 줄어든 반면 캄보디아는 2006년(304건)보다 357.9% 급증했다. 이는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 혼인 규제강화로 인하여 캄보디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7년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캄보디아 여성의 27%가량이 농촌지역 남성과 결혼하였다.<sup>10)</sup>

10) 오관철, "캄보디아대 1년 새 358% ↑...중국 국적이 1위", 『경향신문』, 2008년 3월 27일.

<표 2>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남자+ 외국여자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중 국	3,566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46.9	-8.8
베 트 남	77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29.4	25.3
필 리 핀	1,174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6.6	24.0
일 본	819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4.1	-3.6
캄 보 디 아	*	*	*	19	72	157	394	1,804	659	2.3	-63.5
태 국	240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2.2	20.8
몽 골	64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1.8	-30.1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1.7	40.2
기 타	962	1,004	969	1,218	1,252	1,136	1,236	1,359	1,354	4.8	-0.4
한국여자+ 외국남자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100.0	-10.5
일 본	2,630	2,664	2,032	2,250	3,118	3,423	3,412	3,349	2,743	34.1	-18.1
중 국	210	222	263	1,190	3,618	5,037	2,589	2,486	2,101	26.1	-15.5
미 국	1,084	1,113	1,204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16.8	1.0
캐 나 다	150	164	172	219	227	283	307	374	371	4.6	-0.8
호 주	78	78	90	109	132	101	137	158	164	2.0	3.8
영 국	64	69	86	88	120	104	136	125	144	1.8	15.2
파 키 스탄	36	63	126	130	100	219	150	134	117	1.5	-12.7
독 일	82	94	81	94	109	85	126	98	115	1.4	17.3
기 타	326	372	450	723	779	993	794	922	939	11.7	1.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남자+ 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49.8	-0.6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1	22.7	-34.7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6.2	357.9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1,665	5.7	12.2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1,531	5.3	32.3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594	745	2.6	25.4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273	531	1.8	94.5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334	377	1.3	12.9

기 타	552	817	899	1,246	1,171	1,198	1,233	1,350	4.6	9.5
한국여자+ 외국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9,351	100.0	-1.4
일 본	2,941	3,011	2,377	2,613	3,378	3,672	3,756	3,684	39.4	-1.9
중 국	218	222	272	1,199	3,621	5,042	2,597	2,489	26.6	-4.2
미 국	1,095	1,132	1,210	1,237	1,348	1,413	1,455	1,344	14.4	-7.6
캐나다	149	164	174	223	230	285	308	376	4.0	22.1
호 주	74	79	89	108	136	102	139	159	1.7	14.4
파키스탄	39	64	126	130	103	219	152	134	1.4	-11.8
영국	66	70	87	88	120	106	138	126	1.3	-8.7
프랑스	65	58	80	78	83	76	98	115	1.2	17.3
기 타	368	428	481	768	834	1,026	839	924	9.9	10.1

\* 기타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취득 상황을 보면<표 3>, 2007년 현재 결혼이민자 126,955명 중 국적취득자는 38,991명(30.7%), 국적미취득자는 87,964명(69.3%)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국적취득자는 36,367명이며 국적미취득자는 75,467명으로 나타났고 남성 국적취득자는 2,624명, 국적미취득자는 12,49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수는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취득자와 미취득자의 현황 (단위 : 명, %)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26,964 (100.0)	15,121	111,843	87,964 (69.3)	12,497	75,467	38,991 (30.7)	2,624	36,367	44,258	22,442	21,816

출처: 행정자치부 조사자료, 2007.5.1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12쪽

이혼율의 증가는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의 혼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나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율의 증가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8,828건으로 전년의 6,280건보다 2,548건(40.6%) 증가하였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매년 증가하여 2007년에는 총 이혼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혼 건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 외국인과의 총 이혼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3	1.3	2.4	3.3	5.0	7.1
증 감	-	298	1,236	878	2,002	2,548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40.6
· 한국인 남편+ 외국인 처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44.5
· 한국인 처+ 외국인 남편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증 감 률	-	7.9	13.2	2.5	23.8	33.7

표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5,794건 이혼은 중국 3,665건, 베트남 895건, 필리핀 220건, 일본 219건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처는 타국에 비해 혼인누적건수가 많아(2000~2007년까지 국제결혼 누적건수의 60.7%차지) 이혼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캄보디아 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3,034건으로 일본 1,650건(54.4%), 중국 649건(21.4%), 미국 259건(8.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남편과의 이혼비중이 높은 것은 혼인누적건수가 타국에 비해 많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북한에서 귀화한 사람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처리로 기타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 이혼한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평균 동거기간을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부부가 3.3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 부부가 6.2년이다<표 5>.

<표 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단위: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한국인 남편+ 외국인 처	3.6	3.7	3.3	3.4	3.2	3.3
	외국인 남편+ 한국인 처	5.9	5.9	6.2	6.1	5.8	6.2

2007년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혼 8,828건 중 동거기간이 4년 이내인 비율은 80.0%이다. 이는 2002년 65.3%보다 14.7% 증가한 것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표 6>의 통계로 알 수 있는 것은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빠르게 파탄에 이른다

는 것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장 4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80.0%에 이른다는 것은 다수의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되거나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6〉 동거기간이 0~4년인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구성비 (단위 : 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혼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 외국인과의 총 이혼(A = C + E)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동거기간 0-4년(B)	1,218	1,441	2,456	3,264	5,016	7,060
구성비(B/A)	65.3	66.6	72.2	76.3	79.9	80.0
·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처(C)	401	583	1,611	2,444	4,010	5,794
동거기간 0-4년(D)	347	509	1,443	2,178	3,632	5,229
구성비(D/C)	86.5	87.3	89.6	89.1	90.6	90.2
· 한국인 처 + 외국인 남편(E)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동거기간 0-4년(F)	871	932	1,013	1,086	1,384	1,831
구성비(F/E)	59.5	59.0	56.6	59.2	61.0	60.3

## 2. 국제결혼 정착과정에서 결혼이민자의 인권실태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민자의 인권의 문제는 이들에 대한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광고 내용에서부터 한국 남성과 만나는 과정, 혼인기간 중 그리고 이혼 후 본인과 자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가. 인권침해적인 광고행위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국내에서 보다 많은 한국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지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성차별적·인종 차별적인 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초혼, 재혼, 장애인 환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부보증제' 등, 위와 같은 현수막은 재혼과 장애라는 결혼시장에서 주변화 된 신체들, 위계화 된 글로벌 체제하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주변성, 글로벌 결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여성의 몸, 한국 사회에 깊게 내재된 순결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틀 내에서 허



용될 수 없는 매매혼적 성적 결합이라는 현재 국제결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상징한다.<sup>11)</sup> 이러한 문제는 최근 2007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 2008. 6.15] [법률 제 8688호, 2007.12.14. 제정], 동법 제12조 3항에서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 정보제공의 금지 등을 규정함에 따라 우선 광고로 인한 인권침해는 입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 나. 인신매매형태의 결혼이주

현재 국제결혼 중개과정은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기숙, 관리, 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적' 속성을 지닌다. 맞선을 준비하는 기간 뿐 아니라 결혼 후 입국까지 여성들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되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는 빚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부채 연속적 상황은 여성이 중간에 맞선을 포기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맞선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강제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결혼상대자가 싫더라도 자의에 반하여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개과정에서 17%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up>12)</sup> 남녀의 연령차가 10살 이상 나는 경우가 60%에 가깝다.<sup>13)</sup> 또한 중개업자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주여성은 속았다는 생각에 탈출을 감행하기도 하고, 농촌보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도시에서 도주하기가 쉽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전화를 차단하거나 감금하는 등 남편과 가족들의 감시와 폭력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sup>14)</sup>

#### 다. 자유로운 결정권에 침해 문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만나는 과정에서, '일대일 맞선'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명의 남성이 수백 명의 여성 중에 한명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형태

11) 김정선 "다문화사회를 위한 시론: 차이의 문제로서 국제결혼, 국제결혼으로 초래된 가족, 인종, 민족, 국가의 변화들", 2006.

12) 이와 같은 현상은 20세기 초의 사진신부(picture brides),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지신부(colonial brides)나 전쟁신부(war brides 또는 military brides), 1970년대의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었던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s) 혹은 카탈로그 신부와 비교된다. Beverly Encarguez Perez, Women's Movement, Berkely Women's Law Journal 2003, 211-236; 이해경,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05, 75-77면; <http://www.han-sori.org>. 최근에는 사이버신부(cyber brides)라는 용어도 생겨났는데, 자세한 것은 Felicity Schöffner-Grabiel, Cyber-brides between the U.S.A and Mexico: Transnational Imaginaries, Migration and the Intimate of marriage, University of minnesota Ph. D. Dissertation 참조

13) 부산 CBS, 2006. 11. 6 보도참조.

14) 박선영,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한국법학원, 2007, 15면.

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외국인 여성의 측면에서 '성매매적' 형태로써 남녀를 만나게 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렇듯 만남의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중개업자의 의도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침해 뿐만 아니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한국 남성에게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sup>15)</sup>

#### 라. 가정폭력, 부부강간, 의사소통의 문제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 중 다수가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sup>16)</sup>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에 조사한 여성결혼이민자 9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와서 가정 내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이가 31%,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답변이 14%에 달한다.<sup>17)</sup>

이밖에도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등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강제성행위를 당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선례를 뒤엎고 이를 '부부강간'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된 바 있다.<sup>18)</sup>

- 15) 한국염, "이주여성 현장에서 본 이주여성 정책과 입법", 「국회여성정책포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6. 12. 4면.
- 16) 최근 판례로는 2007년 7월 충청남도 천안에서 19세의 결혼이주여성이 술 취한 남편에 의해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사체로 발견되었다.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을 기다린 것은 지하 월세방에서 감금과 다름없는 생활과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범인으로 검거된 남편은 수사과정에서 "1000만원을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찾기에 매렸다."라고 진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대전고법 2008.1.23. 선고 2007노425 판결).
- 17) 2002년 광주시여성발전센터가 광주와 전남지역의 국제결혼여성이민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7%가 폭행, 18%가 폭언, 12%가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2006. 8. 31. 보도: 경향신문, 2006. 8. 31. 사실 참조.
- 18)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7.26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필리핀 국적 외국인)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협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고동(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강간죄 판결을 받은 남편 임 모씨가 자살함으로써 법정공방은 일단락됐다. 해당 피고인의 사망으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예정이던 항소심이 자동으로 기각되었다. 임씨가 살아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렸다면 2심이나 3심에서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여전히 부부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지는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하여 사안 자체가 부부 사이의 내밀한 문제인 만큼 자칫 흥미위주나 본질을 벗어난 결까지 예기로 흐르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한 보도 태도를 견지했어야 한다는 지적되었다.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 중심에는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내의 인권과 함께 아직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로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을지 모르는 남편의 인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뿐만 아니라 재판 내용을 언론에 상세히 공개한 법원도 비판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판결은 얼마든지 나올 것

또한 폭력행사는 단지 남편만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통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핵가족 형태보다는 대가족 위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sup>19)</sup>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가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경우가 도시지역에서는 14%에 불과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45%에 달해, 현실적으로 노부모를 봉양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시어머니나 시누이 또는 이웃으로부터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창원 여성의 전화가 실시한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복지욕구조사' 결과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식을 빼앗길까봐'(42.1%),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10.5),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서(10.5%) 등이 나왔다<sup>21)</sup>.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 또는 원치 않는 일의 강요를 당한 경우 대응방식에 대하여는 약 30%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그냥 참고 산다."고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8% 정도로 폭력을 경험한 수치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20%),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14%), 신고해도 경찰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13%), 체류자격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10%) 등으로 나타나,<sup>22)</sup> 이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가 외교문제로 비화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58%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여성들의 9% 정도는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생활습관 등의 차이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sup>23)</sup>, 언어장벽으로 인해 남편의 폭력이 행사되더라도 이주여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원할 경우 이혼을 생각해야 하고, 이혼할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국적취득 여부나 자녀의 문제 등에 있어서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하므로 대부분 참게 되는 것이다.

이다. 그때마다 당사자들이 사회적 논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법원의 브리핑 가이드라인과 함께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엄호동, 누가 임모씨를 자살로 내몰았나?, 경향신문 2009.01.22).

- 19)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38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04, 189-219쪽; 광주여성의 전화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광주가정폭력상담소, 2004, 12. 30, 47-65면.
- 20) N. Phipps & M. Roces(ed.),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 N.Y., 2003 참조.
- 21) 창원 여성의 전화,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복지욕구조사」, 창원 여성의 전화, 2006.
- 22)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6, 9, 123-130면.
- 23)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6, 5, 195-243면.

### 마. 경제적 어려움

국제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性을 매개로 모국에 남아있는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타개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에서도 결혼이민자 중 73%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했다고 답했고, 44%가 모국에서 들었던 사전정보와 현실이 너무 달라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이들 외국인 신부들의 57.5%는 기본적으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제력을 지닌 절대빈곤 하에 있는 남성들과 혼인을 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는 여성이 15.5%에 달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0.5%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23.6%는 의료보장체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 임신과 출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관계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들 가운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 바. 자녀문제

국제 결혼이민자들은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겪으면서, 언어적, 정서적, 문화적 생활 관습적 문제로 인해 한국생활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2세를 출산하고 있다.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인 이주여성은 아이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하는데 서툴고, 언어의 문제로 자녀가 언어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또한 이들 자녀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습부진현상 등 이들이 원만하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Ⅲ. 국제 결혼이민자에 대한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 1.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시의 문제

#### 가. 국적법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조 제1항). 국적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의 취득은 출생과 귀화<sup>24)</sup>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귀화는 다시 크게

'일반귀화'와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뉜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국적법 제5조), 간이귀화는(국적법 제6조) 한국인과 혼인하는 외국인이 보다 쉽게 귀화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에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귀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은 간이귀화에 의한다. 간이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은 1997년을 기점으로 개정되었다. 종래 1997년 개정 전의 국적법에서는 한국인과 혼인하는 자가 외국인 여성의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다(구 국적법 제3조 제1호).<sup>25)</sup>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이들은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1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본인 이름으로 호적을 만들 수도 한국인 처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 국적법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sup>26)</sup> 결국 1997년 이후 개정된 국적법은 남녀평등사상에 입각하여 국제결혼을 하는 당사자는 각자의 국적을 유지하든지, 귀화를 통해 상대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국적법 제6조 제4항),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를 원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적법 제4조).

2004년 이후 간이귀화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적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국적법 제6조 제2항의 3호, 4호). 이 개정은 그 전과는 달리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중단된 경우 혹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신분을 보장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24) '귀화'란 과거 한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25) 혼인 시 곧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는 매우 드문 편이다. 스위스, 벨기에, 호주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본국 국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26) 석동현, "가족법과 국적의 문제", 「국제가사분쟁의 제 문제」, 한국가족법학회, 2006. 11. 4면.

(1)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국제결혼 이민자의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원하며, 이 때 간이귀화를 통해서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간이귀화의 요건은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한국인과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외국에서 만나 혼인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 들어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적법 제6조 제2항 1호, 2호).<sup>27)</sup> 여기서 '혼인상태'라 함은 귀화를 신청하는 시점까지 이혼, 혼인의 취소 및 무효 등의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중단됨이 없이 사회통념상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체류 중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국동기, 주거현황 및 생활기반의 연속성 등을 비추어 출국 전과 재입국후의 국내체류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출국 전의 체류기간과 재입국 후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국내거주기간을 계산한다.<sup>28)</sup>

그러나 간이귀화의 절차에 대하여 몇 가지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첫째, 국적취득의 절차가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적취득 절차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율은 상당수에 이른다(11.1%).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sup>29)</sup> 역시 국제결혼의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 총각의 혼인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2007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126,955명 중 국적취득자는 38,991명(30.7%), 국적미취득자는 87,964명(69.3%)이다.<sup>30)</sup> 결혼이민자 모두가 한국의 국적취득을 원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당 부분 한국에 혼인을 통해 이주해 온 결혼이민자는 자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신분의 안정과 취업 등 여러 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적취득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은 위장결혼을 막겠다는 명목하에 간이귀화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sup>31)</sup> 국적취득이 수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27) 이것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국적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귀화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된다. 현재 귀화신청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할 때 까지는 체류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배우자가 간이귀화를 하는 경우 필기시험은 면제된다.

28) 석동현, 전계논문, 2006. 11. 4. 8면 인용.

29)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2007.4.4. 조례 제2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0) <표 3> 참조.

31) 1997.12.13 국적법 전문개정 이유에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2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혼인의 의사나 혼인공동생활의 실체 없이 한국에 입국 혹은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장결혼의 문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또는 '형법'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위장결혼을 막겠다는 의도로 국적취득 절차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간이귀화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완화시켜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의 국내거주기간의 요건을 완화하여 거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통일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sup>32)</sup>

둘째, 간이귀화의 절차상 재정능력의 증명에 관한 문제이다.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서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상태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국적취득의 절차에서 누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도시 혹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빈곤층에 속하는 자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재정능력(3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금증명)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국적취득의 심사에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증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한 요구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가정의 유지와 지속여부를 경제적 능력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상(헌법 제36조) 그리고 국제규약 제23조 제4항의 규정 내용에 이것이 위배되지 않은지 의문이다.<sup>33)</sup>

셋째, 귀화신청 시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점이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시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sup>34)35)</sup> 특히 실질적으로 신원보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남성이 이주여성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 신고함으로써 이주여성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면이 있다.<sup>36)</sup>

32) 소라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지정토론 요지)",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심포지엄,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한국법학원, 2007, 46면.

33) 소라미, 전계논문, 2007, 47면.

34) 소라미,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4면;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8, 3, 105~106면.

35) 한국염,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현황과 과제, 매매혼적 국제결혼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시아여성전략회의 자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6, 12, 8면 : 현재 국제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8만 명 가량 되지만, 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10%에 불과하다. 남편들이 국적 취득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도망갈까 봐 안 해주거나, 국적취득 신청으로 배우자를 학대하는 무기로 삼기거나 또한 보증금 3천만 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36) 김재련, 전계논문, 2007, 106면.

이러한 점은 배우자간의 권력관계를 양산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평등관계의 확립에도 문제가 있다.<sup>37)</sup> 그러므로 이 제도는 폐지되거나 혹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법무부는 2008. 4. 4.에 국적법 시행규칙<sup>38)</sup>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인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교육이수를 의무화 하였다.<sup>39)</sup><sup>40)</sup> 또한 법무부는 이에 앞서 2007년 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 상 불이익도 부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페널티'(국적 취득 불허, 체류 상 불이익)를 부가하는 방식의 통합 교육 '의무화'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원래의 정책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sup>41)</sup>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과 연계한 "의무화" 방식이 아니라 이주자에 대한 "정착지원서비스"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2) 간이귀화 신청절차 중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간이귀화 신청절차 중 혼인관계가 중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2004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어 한국에 남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중단된 것에 대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2004년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3호와 4호가 신설되었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 혼인관계가 중단되고, 결혼이민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후 모국으로 송환되지만, 여전히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이혼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 한국에 불법체류자로 머물기도 한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며, 자녀가 있는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sup>42)</sup>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37)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절차상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규정은 가정폭력 및 혼인파탄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38~39면).

38)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38호, 2008. 4. 4. 일부개정]

39) 제4조 (귀화적격심사) ①영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호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40) 사회통합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제4조는 부칙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1) 법무부훈령 제683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수해야 하는 시수는 250여 시간에 이른다.

42) 김형균, 전계논문, 211면.



자(제3호)로서 혹은 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제4호)로서 동조 제1호,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는 간이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본국적국의 생활기반을 포기하고 입국하였다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간이귀화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sup>43)</sup>

(가) 사망, 실종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당연히 해소된다. 문제는 부부의 일방이 실종된 경우이다. 민법상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민법 제28조)되는데, 결국 그 실종기간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민법 제27조). 그러나 이 규정에서의 실종의 의미를 민법의 실종선고의 요건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에 의하여도 (5년 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귀화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실종선고절차를 거쳐 간이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결혼이민자가 제840조 제5호를 이유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적법 제6조 2항 제3호에 의한 실종선고의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sup>44)</sup> 실종선고의 기간을 5년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

(나) 그 밖에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외에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이다.<sup>45)</sup> 그러나 이때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제3호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

43) 이정주, "국적법상 여러 논점들에 관한 소고", 「법조」, 법조협회, 2005, 278면.

44) 석동현, "가족법과 국적의 문제", 「국제가사분쟁의 제 문제」, 한국가족법학회, 2006, 11. 4. 9면 참고.

45) 이혼에 기한 간이귀화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화신청서, 신청인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 재정관련 서류, 신원진술서 4통을 10만 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진단서 및 사진,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 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설명하는 확인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혼에 기한 간이귀화 심사절차는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심사절차와는 달리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 즉,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유가 없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규정은 남편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주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혼청구 및 간이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현재 이들의 수는 증가<sup>46)</sup>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문제이다.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도 모르고 국내 사정에 미숙하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구비하거나 이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거나 시민단체 등의 면담을 통해 작성한 서류로 대신하게 하는 등 간이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47)</sup>

둘째,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8)</sup> 그러나 한국인 부부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보다는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을 완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간이귀화 신청시 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거나(위자료 등),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sup>49)</sup>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2006년 5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내용, 공인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시민단체의 사실 확인서, 신빙성 있는 이웃의 진술서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입증방법을 완화하였다.<sup>50)</sup>

셋째, 귀책사유가 없이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간이귀화 신청 시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에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국적 신청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가 필기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근거도 약할 뿐만 아니라 사실 농·어촌으로 혼인 이주한 이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sup>51)</sup>이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46) 석동현, 전계논문, 2006, 9면.

47) 박선영,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한국법학원, 2007, 2, 19면.

48) 이정주, 전계논문, 2005, 283~284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9)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 존속의 폭행 등에 관한 사실판계가 적시된 형사 유죄판결.

50) 김재련, 전계논문, 101면.

넷째,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문제이다.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국의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이혼소송 시 체류자격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합법적인 체류는 보장되나 발급되는 비자로는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sup>52)</sup> 이들이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공동의 자녀를 양육할 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는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sup>53)</sup> 그러므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 상관없이 자녀의 출산 시 외국인 배우자에게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녀의 모 혹은 부의 신분의 안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만약 간이귀화가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강제퇴거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자는 부 혹은 모와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 2. 강제퇴거 및 국적의 상실시의 문제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0조 제1항). 외국인 배우자가 그 기간 내에 자신의 본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0조 제2항).

한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열거되어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는 강제퇴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 퇴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들이 강제퇴거 당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불입금, 채권미회수로 소송을 해야 하거나 범법행위 등으로 소송에 제류 중인 경우, G-1비자를 발급받아 해당기간 동안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는

51) 박선영, 전계논문, 2007, 20면.

52) 소라미,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9면.

53) 소라미, 전계논문, 2004, 9면.

것이 가능하다. 현재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형사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강제추방하고 있다.<sup>54)</sup> 현재 위장결혼 한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 위장결혼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고, 강제추방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일단 국적을 취득한 경우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강제퇴거 시킬 수 있지만, 외국인이 일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는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외국인으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의 상실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법은 불법적인 방법이나 위장결혼에 의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후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박탈하거나 강제추방 할 근거규정이 없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이미 본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박탈한다면 그는 무국적자가 된다. 그러나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정' 제32조는 동 협약의 체결국은 "무국적자들의 귀화와 이들이 거주국에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sup>55)</sup> 또한 제8조는 '체약국의 국적박탈로 무국적자가 될 경우 체약국은 그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위장결혼을 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를 무국적자로 만들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국적을 취득한 자는 위장결혼이 드러난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정 역시 쉽지 않은 형편이다.<sup>56)</sup>

이에 대한 문제해결로 일단 귀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장결혼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기타 국내법적 징벌에 그치고 강제퇴거조치는 하지 않거나 혹은 강제퇴거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귀화자가 6개월 내에 본 국적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sup>57)</sup>

### 3. 체류에 관한 문제

#### 가. 국제결혼 시 발급되는 F2 비자

54) 이승우, "이주여성의 혼인과 법률문제", 『한국동북아논총』, 제44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262면.

55) Paul Wei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11, 1962, pp. 1073~1075; 박정원, "국적에 대한 권리와 소수자보호: 국제법의 차원에서", 『중앙법학』, 제9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7, 268~269면.

56) 김재련, 전계논문, 2007, 109면.

57) 석동현, 전계논문, 2006, 10면.

국제결혼 한 외국인 배우자는 거주비자 F2자격으로<sup>58)</sup> 한국에 체류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로 2년 동안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경우 간이귀화 신청을 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F2 비자를 소지하게 하게 된다. F2비자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3년인데, 통상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 출입국관리국은 이들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연장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나. 간이귀화 신청 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의 체류

앞서 설명하였듯이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3호와 4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 배우자는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귀화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체류가 허가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격(F2)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내 혼인 동거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 1년 범위 내에서, 2년 이상일 경우에는 1회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의 귀책사유가 양당사자에게 있거나 혹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동거(F1)<sup>59)</sup>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때 국내 결혼 동거기간이 2년 미만일 때에는 1회 1년 범위 내에서, 국내 결혼동거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1회 2년 범위 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다. 영주권 취득

국적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을 의미한다면,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

5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F2(거주)는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 다. 난민인정을 받은 자 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마.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 된 자는 제외한다).

59)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경우 거주자격 소지자에 준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그러나 기타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체류하는 자는 취업허가를 불허한다.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 받은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sup>60)</sup> 외국인 배우자가 간이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자신의 본 국적을 유지한 채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한국은 영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화와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에 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3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영주권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를 통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거주비자(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sup>61)</sup>,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가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그러나 간이귀화 요건을 국내 2년 거주기간으로 하고 영주 비자를 신청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sup>62)</sup> 이에 2005년 출입국관리법은 F-2 비자를 소지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비자(F-5)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2년 동안 거주하면 영주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혼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위장결혼의 문제

민법상 혼인하는 당사자가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이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가장혼인'이라고 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부부가 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민법 제815조 제1호) 한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가장혼인'이 될 것이다.<sup>63)</sup>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에 있어서 혼인의 합의란 신

60) 법무부, 「국적법해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7, 9면.

61)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는 "성별, 연령, 직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될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라고 판결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1.6.21 선고 2000누12913).

62) 소라미, 전계논문, 2007, 45~46면.

63) 최근 이러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 한·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년 11월부터 혼인신고 및 사증발급제도를 시행하자 국제결혼건수는 감소하다가 다시 2000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

고의사만이 아니고 부부관계 설정의사인 효과의사이며, 이 의사가 결여한 신고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sup>64)</sup>. 또한 판례는 중국국적을 갖은 조선족 여자가 한국인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혼인공증서를 받아 제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식을 준비하는 중 혼인식이 무산된 경우, 그들에게 혼인생활이 없으면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sup>65)</sup> 이 판결은 혼인신고는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예정대로 결혼식을 한국에서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sup>66)</sup>. 가장혼인에 대하여 판례는 실제적 생활관계가 없는 곳에 법적 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가장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다.<sup>67)</sup> 그러나 '가장혼인' 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sup>68)</sup> 최근의 판례에서는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지만 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고, 4년간 함께 살고 있고 현재 유방암 3기로 투병 중이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sup>69)</sup>

결국 혼인이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와 혼인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 요건으로써의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혼인에 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혼인공동생활이 존재하였다면 이들의 혼인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sup>70)</sup>,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

## 5. 미등록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

국제결혼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은 한국인과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미등록외국인'간의 혼인이다.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미등록외국인이라 해도 한국인과 혼인할 수 있다. 이들이 혼인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

하여 2003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64) 대판 1985.9.10. 85도81: 최동렬, "혼인계축에 관한 의사합치는 있었으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성부", 「대판해설」, 통권 제4호, 1985. 312~322면 참조.

65) 청주지법, 1997.6.27. 96도1608.

66) 이희배, 「주석 가족법판례연구」, 삼지원, 2007. 123면.

67) 대판, 1996.11.22. 96도2049.

68) 이정희, 「가족법」, 법원사, 2008. 48~49면.

69) 부산지법 제4형사부, 2008.7.22 2008고단3039.

70) 김시현, "혼인의 무효",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11면; 김계순, "혼인의사와 혼인무효에 대한 제고", 「중앙법학」, 제9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7. 45~67면 참고.

다. 왜냐하면, 혼인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서류는 국적증명서, 친족증명서(가족증명서), 미혼증명서 등이기 때문에 이때 미등록외국인이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등록외국인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져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등록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체류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 미등록외국인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하였기 때문에 다시 체류사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미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미등록외국인은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중 하나가 혼인신고에 대한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혼인을 한 자에 한 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6. 혼인 해소시의 문제

국적을 달리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은 법의 충돌이 있으므로 이에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할 것인가 하는 준거법 결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 국제사법 제39조는 제37조의 혼인의 효력의 규정을 준용해서 정하나,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37조에 의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없을 때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적용된다.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의 상거소지가 없다면, 다음은 이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정이 매우 곤란하므로 이러한 실무상의 난점을 피하기 위하여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sup>71)</sup>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사법은 이혼의 방식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의 유효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혼의 방식은 이혼의 준거법뿐만 아니라 이혼지법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혼의 준거법이 외국법이 되는 경우 나라마다 이혼법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71) 법무부, 「국제사법해설」,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1, 142면.



가 있다. 즉, 준거법인 외국법이 이혼을 금지하는 경우<sup>72)</sup> 우리나라의 공서조항인 국제사법 제10조에 따라서 그 적용을 배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판례<sup>73)</sup>는 우리나라 여자가 필리핀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필리핀 민법이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척하였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혼은 한국법에 의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귀화허가의 효력이 문제되거나 그 밖에 국적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법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결국 이혼으로 부부관계는 해소되고(민법 제834조, 제840조),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되고(민법 제837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민법 제837조의 2). 그리고 혼인 중 협력하여 이혼 공동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39조의 2), 상대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라면 무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3조).

## 7.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문제

### 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에 대한 공시

2005. 2. 3.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sup>74)</sup>, 2005년 3. 31.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호적법이 전면 수정되어 현재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8장, 124개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중요한 특성은 개인별 편제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결혼 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독자적인 가족관계등록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의 증명은 한국인

72)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으나, 필리핀이나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다.

73) 가정법원, 1984.2.10. 선고 83드209.

74)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10 등 결정 참조.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혹은 혼인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문제점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 이후 다수의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등 제반 신분증명서 내용과 절차에서 이들은 소외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기재될 때, 외국인 배우자의 알파벳으로 된 이름이 표기도 안 된 채 한국식 발음에 맞춰 한글로 기재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마다 정확한 기준 없이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줄여서 기재해 증명서마다 제각각 표기되어 표기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비판되고 있다.

둘째,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란에 외국인 배우자의 한글발음만 적혀있어서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이나 외국인등록증과 대비해 보는 경우, 대충 생년월일이 같으면 동일인으로 판단하는데, 생년월일조차 없으면, 사람이 동일인인지 진정한 배우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 때 외국인 배우자는 자신의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은행에서 자녀의 통장을 만들거나, 자녀의 보험수령을 대신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sup>75)</sup>

결국 신분증명에 의한 서류제출 시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따로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혹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이나 가족증명서에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그나마 외국인등록증과 비교하여 동일인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생년월일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현재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문제시 되는 것은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증서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인데, 입국 후에 한국인 배우자(남편)이나 가족들 혹은 결혼중개업자들이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인 배우자(여성)의 개인의 사회적 신분보장이 기본적으로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다.<sup>76)</sup>

75) 김성미경, "방법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증명",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 가족관계등록법 권리침해 실태발표 및 대안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008. 5~6면.

76) 김성미경, 전계논문, 2008. 9면.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의 이름이 외국인등록증의 이름과 다르게 표기된 경우 대법원 및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외국인등록증의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sup>77)</sup>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알파벳 이름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외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의 생년월일 이외에도 외국인등록증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방식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sup>78)</sup>

#### IV. 맺는말

한국인과 혼인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상태의 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혼인에서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더 나아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의 신청시 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간이귀화의 국내거주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혼이 귀책사유의 증명을 완화하고, 국제결혼을 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등 사유에 상관없이 간이귀화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거나, 국적취득 절차에서 배우자 동행 및 신원보증 폐지, 경제능력에 대한 증명 폐지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있어서의 문제점의 개선 등이 검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비교할 때 분명히 열악한 여건에 있다. 결혼이민자가 여성인 경우 출산과 양육 남편의 폭력이나 성적인 위협 등 남성 외국인 배우자에게 비해 더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국가는 이들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자의 입장과 이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7) 여성부, 가족관계등록법 관련 간담회 자료, 2008.4.4 참조.

78) <http://www.e-cbs.co.kr/detail.php?number=920&thread=21r02>: 소비자연합신문, 8월 15일 참조.

## 참고문헌

- 강봉수, “섭외가사사건의 제 문제”, 「섭외사건의 제 문제(하)」, 제34집, 법원행정처, 1986.
- 김계순, “혼인의사와 혼인무효에 대한 재고”, 「중앙법학」, 제9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7.
- 김성미경, “방법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증명”,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 가족관계등록법 권리침해 실태발표 및 대안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8.
- 김시현, “혼인의 무효”, 「민사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11.
- 김이선 외,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기타간행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12.
-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8. 3.
- 김형균, “여성 결혼 이민자 실태와 사회적 통합방안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한국사회학회, 2007.
- 문순영,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통권 제72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6.
- 박선영,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한국법학원, 2007. 2.
- 박정원, “국적에 대한 권리와 소수자보호: 국제법의 차원에서”, 「중앙법학」, 제9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7.
- 법무부, 「국제사법해설」,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1.
- 법무부, 「국적법해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7.
- 석동현, “가족법과 국적의 문제”, 「국제가사분쟁의 제 문제」, 한국가족법학회, 2006. 11. 4.
- 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소라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지정토론 요지)”,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심포지엄,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한국법학원, 2007.
- 소라미,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 소라미,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이주의 여성화와

-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정책, 정부에 힘실린다»,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 보도자료, 2007. 11.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가족관계등록법관련 간담회 자료», 2008. 4. 4.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8.
- 이승우, “이주여성의 혼인과 법률문제”, 「한국동북아논총», 제44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 이정주, “국적법상 여러 논점들에 관한 소고”, 「법조», 법조협회, 2005.
- 이희배, 「주석 가족법판해연구», 삼지원, 2007.
- 정기선 외,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2.
- 최동렬, “혼인계출에 관한 의사합치는 있었으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성부”, 「대판해설», 통권 제4호, 1985.
- 한국염,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현황과 과제, 매매혼적 국제결혼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시아여성전략회의 자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6. 12.

[Abstract]

## Rechtsprobleme und die Lösungen bei internationalen Eheschließungen

Cho, Eun-Hee

*Professor, Law School, Jeju National Univ.*

Man nennt es internationale Heirat, wenn ein Mann und eine Frau verschiedene Staatsangehörigkeiten haben und sie heiraten.

In Korea steigt die Zahl des internationalen Eheschließungen. Die Statistik zeigt, dass sich der Anteil von internationalen Eheschließungen an der Gesamtzahl aller Eheschließungen von 1990 bis 2007 von 1.2% auf 11.3% erhöhte.

Die meisten ausländischen Ehepartner sind Frauen, die meist aus China, Vietnam, den Philippinen und Kambodscha. Diese immigrierten Frauen haben Schwierigkeiten, sich in Korea einzuleben, weil die Sprache und Kultur anders sind und es Vorurteile gegenüber Ausländern gibt.

Staat und Kommunen versuchen, diese zwischenkulturellen Familien mit verschiedenen Programmen und finanziell zu unterstützen. Es ist besonders wichtig für ausländische Ehepartner, dass sie gesetzlich voll abgesichert in Korea sind. Sie müssen zum Beispiel unterstützt und beraten werden beim Erlangen der koreanischen Staatsangehörigkeit und beim Aufenthaltsrecht: wenn sie keine koreanische Staatsangehörigkeit haben möchten; im Falle einer Scheidung vor Erhalt der koreanischen Staatsangehörigkeit; wie der ausländische Ehepartner im Familienbuch und Heiratsbuch registriert wird; was passiert, wenn ein Koreaner und Ausländer eine Scheinehe eingegangen sind und wie die Gerichte damit umgehen und so weiter.

In meiner Arbeit wird dargestellt, wie diese juristischen Probleme geregelt werden.

**Key words** : internationalen Eheschließungen, ausländische Ehepartner, Staatsangehörigkeit, Familienbuch, Scheinehe, Aufenthaltsrecht, ausländische Ehefrau, immigrierte Frau.